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340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0/2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09



금 성 회 관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 305호

가맹사업 담당 : 정 현 묵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 별 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금성회관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금성회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영업표지	주 소			
금성회관 외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 305호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	법인설립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9.28.	2021.09.28.	정현목, 이동희	1533-0383	-
법인등록번호	110111-8037536	사업자등록번호	776-87-0226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법인만적기)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정현목 이동희/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금성회관 외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 3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현목/이동희	1533-0383	-
사내이사	정현목 이동희/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금성회관 외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 3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현목/이동희	1533-0383	-
감사	이현금/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금성회관 외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 305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현목/이동희	1533-0383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금성회관	고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월매출로 인정받은 탄탄한 브랜드 금성회관입니다.
상 호	금성회관 OO 점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1-0144487 등록번호: 40-2023-0012110
상표/서비스표		출원번호: 40-2022-0130041 등록번호: 402133740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80,678	115,302	65,376	1,170,561	62,222	55,402
2023년	347,651	189,225	158,426	3,371,569	105,163	93,049
2024년	649,456	329,110	320,346	4,127,302	184,377	161,920

나.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동일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현묵 이동희	대표이사	2021.09~현재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대표이사	가맹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현묵 이동희	사내이사	2021.09~현재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사내이사	운영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현금	감사	2021.09~현재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 원 수 (명)		직 원 수 (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더감동컴퍼니	가맹사업 경영	2022.01.02~현재	금성회관등록번호: 20213401)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더감동컴퍼니	가맹사업 경영	2025.02.20~현재	꾸이명가등록번호: 20250199)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or 등록 여부(일자)	출원번호 or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 2021.07.14. 등록일 2023.01.18	출원: 40-2021-0144487 등록: 40-2023-0012110	정현묵, 이동희	2033.01.18
	상표 서비스표	출원일 2022.07.13 등록일 2024.01.02	출원: 40-2022-0130041 등록 402133740	정현묵, 이동희	2034.01.02
상표권 부여기간	상표권등록만료일까지				

- ▶ 사용권자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는 상표권자 이동희, 정현묵 에게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사용기간: 2021.09.~ 상표권등록만료일까지)
- ▶ 상기 상표와 서비스표는 귀하가 당사의 승인 하에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입니다.
- ▶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금성회관] 가맹사업 현황

1. [금성회관]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2. 01. 02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
[금성회관]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직영점 없음

2. [금성회관]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더감동컴퍼니	금성회관	정현묵, 이동희	2022.01.02~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49, 에이동 305호

3. [금성회관]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금성회관	한식	소갈비, 소양념갈비, 돼지양념갈비, 육회비빔밥, 한우국밥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금성회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 역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 체	7	7	0	16	16	0	19	19	0
서 울	4	4	0	5	5	0	6	6	0
부 산	0	0	0	1	1	0	1	1	0
대 구	0	0	0	0	0	0	0	0	0
인 천	0	0	0	1	1	0	2	2	0
광 주	0	0	0	0	0	0	0	0	0
대 전	0	0	0	1	1	0	2	2	0
울 산	0	0	0	0	0	0	0	0	0
세 종	0	0	0	0	0	0	0	0	0
경 기	3	3	0	3	3	0	3	3	0
강 원	0	0	0	1	1	0	1	1	0
충 북	0	0	0	1	1	0	0	0	0
충 남	0	0	0	1	1	0	2	2	0
전 북	0	0	0	1	1	0	1	1	0
전 남	0	0	0	1	1	0	1	1	0
경 북	0	0	0	0	0	0	0	0	0
경 남	0	0	0	0	0	0	0	0	0
제 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금성회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년	0	7	0	0	0	7
2023년	7	9	0	0	2	16
2024년	16	5	0	2	0	19

6. [금성회관]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의 [금성회관]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더감동컴퍼니	꾸이명가	20250199	한식	0/0	0/0	0/0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지역	2024 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매출액 평균		연간 매출액 상한		연간 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전체	19	711,903	22,120	1,637,130	60,634	216,405	5,802	18
서울	6	1,025,697	37,163	1,637,130	60,634	495,245	20,635	5
부산	1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1곳						1
대구	0							0
인천	2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2곳						2
광주	0							0
대전	2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2곳						2
울산	0							0
세종	0							0
경기	3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3곳						3

강원	1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1곳						1
충북	0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0곳						0
충남	2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2곳						2
전북	1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1곳						1
전남	1	5곳미만/영업기간 6개월 이상 가맹점수 1곳						1
경북	0	-	-	-	-	-	-	0
경남	0	-	-	-	-	-	-	0
제주	0	-	-	-	-	-	-	0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매출액 파악이 안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기준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9개	62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현재기준)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인천전지역, 경기북부지역	주식회사 위더스윙/ 금성회관 경기지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19, 제 1동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김다슬	(비공개)	3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3 04.07~2024. 04.06-	○	○	X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전년도 기준)

당사에서 [2024년]에 [금성회관]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4.01~2024.12	120,323,014	120,323,014		
			120,323,014	120,323,014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illegible]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전 지점	02)2678-015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체결 후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는 가맹금 예치신청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계좌로 가맹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입금 내역은 당사로 등록정보가 전달됩니다.



귀하는 예치 후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 현황을 조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예치금의 반환승인, 지급승인, 지급보류 등록 및 해제는 인터넷 뱅킹(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용 가능)을 통해 직접 등록 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금성회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기타 기본공사 외 추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인테리어, 설비/정착물 비용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최초 가맹비	4,400	계약 체결과 동시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반환할 경우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교육비	4,400	"	교육 시작 3일전에 계약 해지	교육에 소요된 실제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	[8,800]				

나. 보증금

계약이행 보증금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채무 또는 귀책사유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미수금, 기타 홍보비 등의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을 제외하고 반환	반환 시 미지급 금액을 공제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최초 가맹비	4,400
최초 교육비	4,4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합계	[10,8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60,500				홀매장 기준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5,200	1,7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즉시	공사 전 계약 취소	66㎡(20평)기 준 (3.3㎡ 당 1,760)
간판	협력업체	7,7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66㎡ 기준
필수설비	지정업체 (협력업체, 협력업체)	16,500	825	계약일	협력업체 주문 전	66㎡ 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및 지정업체 (협력업체)	1,1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추가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도면 제공비 및 감리대가로 3.3㎡ 기준 220천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7일 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비용: 철거,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가스가설공사, 화장실 공사, 각종 가구류 등 건적외 품목

마.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점포를 파악 → 가맹본부에 통지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및 가맹희망자의 최종결정 → 가맹본부의 승인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귀하에게 조언할 뿐이며, 이는 해당입지의 법적, 구조적 가능성여부 및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의 책임과 결정으로 신중하게 점포의 설치 장소를 정하여야 합니다.**

[점포선정의 문의처 : 당사, 표지에 표기된 전화번호 참조]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및 품질 및 성능이 인정된 물품과 설비 등이 필요하고, 사정에 따라 부득이 실제 물품 내역 및 공급업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당 사	총 매출액의 2.2%	익월 3일	-	-	-
광고·판촉 분담금	당 사	상품광고시 50%	별도공지	광고·판촉 미실시	광고실시 이후	
개점 후 교육훈련비	당 사	실 비	계약 체결과 동시	교육 미실시		교육 필요시 지급 (보수,특별교육)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당사	실 비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교체·보수 후 반환 안됨		-

점포환경 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교체·보수 후 반환 안됨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직접 선정한 업체와 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
POS기기	협력업체	36.3	금액 단위:원(부가세미포함) *패키지(기본) 구입: 950,000/ 월33,000 메인포스(프로그램+IC리더기+금전함+키보드 &마우스)+단말기&서명패드+주방프린터 *패키지(오더1) 구입:1,150,000/월55,000 메인포스(프로그램+IC리더기+금전함+키보드 &마우스)+오더포스(프로그램)+단말기&서명 패드+주방프린터 *패키지(오더2) 구입:1,350,000/월88,000 메인포스(프로그램+IC리더기+금전함+키보드 &마우스)+오더포스2(프로그램)+단말기&서 명패드+주방프린터 *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 등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별도의 계약체결시 안내하기로함.		오픈시 설비기기로 구매 또는 월 비용으로 지불 중 선택 가능함. 패키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선택하여 계약체결 가능
지연이자	당 사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	모든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또는 운영방침과 각 가맹점의 영업 방식에 따른 혜택 부여 등으로 상기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분담금은 일정비율로 청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가맹점 운영 중 원칙적으로 받
지 아니하고 특별교육에 한하여 필요시 사전통지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광고분담 기
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필요 시 부담분의 일부를 가맹점 (판촉)지원비로 사용합니다.

물품 발주 및 미수금 총당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중 동등액이 상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미수금 또는 연체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발주 차단 및 계약 갱신 거
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 또는 연체로 말미암아 발주 차단을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에 별도 조치(계약이행보증금의 증액 또는 지
급이행보증보험의 설정)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
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
니다. (지급금액 비율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작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분기별 1회	문 의 : 당 사
각종 설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각종 설비관리 상태 점검	분기별 1회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위생상태, 고객응대방법 점검	분기별 1회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회계조사	분기별 1회	
기 타	가맹본부의 운영지침 등 준수여부 점검,	분기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재계약 가맹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물품 공급에 따른 미납과 연체 등에 의한 발주차단,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의 갱신거절과 해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없음				
재가맹비	없음	재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추가 교육비	실 비	추가교육 전 7일 이내	계약연장(갱신) 전 계약포기	교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 (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단순히 세금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대표자 동일한 때)는 제외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당사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이외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에 다른 요인이 경합되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부분 만큼 책임이 경감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가맹금은 가맹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가맹금 반환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사에 지급해야 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내역	공급가액(천원)	부가세(천원)	총금액(천원)	비고
----	----	----------	---------	---------	----

양수 가입비	양수인에게 받는 가맹비	없음	없음	없음	
교육비	양수인 신규 교육	4 000	400	4,400	
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2,000	0	2,000	부가세 적용X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하여 **가맹비** 및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의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와 당사와의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종료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은 [금성회관]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즉시 상환
- ② [금성회관] 브랜드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의 상징물의 제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금성회관]의 가맹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 ③ 당사의 운영매뉴얼, 규정집, 지침 등의 자료 반환
- ④ 당사의 소유물,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의 반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 ~ 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통일성과 명성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재된 규격(품질기준) 중 "매장별 상이"는 매장별로 사이즈 및 구조 등이 달라 통일된 규격이 없고, 가맹점사업자가 원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포함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형태를 권장하는 품목의 경우, 규격(품질기준)에 충족되는 품목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명 입력의 통일성과 상품(용역)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상기 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의 경영상의 결정이나 거래관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기준에 맞추어 변경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금성회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금성회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명성과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과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운영 방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고,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메뉴를 무단 삭제하여서도 안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십시오.

귀하가 별지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또는 운영방침 및 매뉴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상기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 외**에는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1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만 19세미만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금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별지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격은 물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가맹계약서 상 [별첨]1의 영업지역확인서의 내용과 표시에 의하며,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0.3km]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양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당사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주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주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주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주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가맹점주가 선택하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별첨1]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가지도록 합니다.

당사는 전항의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에 있어서 가맹점주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영업지역확인서에 표시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절대적 또는 배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제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지역에서 제외되거나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다른 브랜드인 경우 직계열회사의 영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금성회관, 구이명가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 계약매장에서 반경 0.3km 를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시장, 호텔, 리조트, 공항,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형병원, 관공서, 대학교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이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됨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지도별첨이 없을 경우 가맹점으로부터의 반경을 영업지역으로 함)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가맹본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금성회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특수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는 특수상권에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해당 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요청과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 운영 후 직영점을 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가. 가맹계약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 3 】** 년이며, 이후 자동갱신 또는 재계약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 일부터 **【 3 】** 년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금성회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일반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 경매 신청 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
○ 가맹점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점 본사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점본사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1항(가맹점의 표시)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제28조 제1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본사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6호
○ 가맹점사업자가 경업을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을 통하여 가맹점본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은 행위를 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7호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로열티, 광고, 판촉비 등의 대금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을"의 채무가 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제28조 제1항 제8호
○ 가맹점사업자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9호
○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0호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 된 점포설비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교체·보수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1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감독 및 시정요구권)에 의한 가맹점본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점본사에 의해 변경된 상품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3호
○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자점매입)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의 정한 매뉴얼 기준에 따른 합리적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당사의 가맹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6호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본사의 가맹점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행위를 지속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7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와 협의 없이 점포관리 업무를 5일 이상 방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18호
○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점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제28조 제1항 제19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가맹점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물품 등 기타 설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18조 제4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적정 매장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제18조 제4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본사 또는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4항 제3호
○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 되는 경우	제18조 제4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8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2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4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5호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6호
○ 가맹사업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으로 계약서 또는 합의서 등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여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7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 제3항 제8호
○ 기타 당사와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5조 제3항 제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바.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귀하와의 상호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의 개정 또는 기타 관련업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사의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 인지 및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 동의 → 계약서 작성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동의 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 또는 수정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가 **없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당사의 승인이 없었던 경우 당해 계약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승인조건은 아래 별도 기재)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영업 양도일 60일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서면 통지(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약 5-10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 사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경영마인드 및 자금동원능력 및 자신의 직업적성이 반영되어 “본 계약”상 그 지위가 결정 되었던 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전대, 대리행사(영업의 양도 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하여 “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 등”에 앞서 “갑”에게 60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에게 먼저 “양도 등”을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는 매출액을 허위로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해당 손해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양도 등”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양도양수 승인 조건으로 양수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당사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위 내용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사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양도절차를 이행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11조의 최초가맹금(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규계약 체결이 아닐 경우의 비용은 정보공개서 [IV.-3-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때, 가맹본부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권이 양도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 양도양수 시 영업설비, 시설물, 집기 등의 감가상각분과 향후 이에 대한 보충 및 필요비용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양도금액이 양도인의 초기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등 양수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을 것이 명백하여 오히려 양수인에게 신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양도양수에 대하여 승인을 취소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은 종료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양도양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책임과 결정에 의한 결과이며, 양도양수에 대한 당사의 승인이 양수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 등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실제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재가맹비를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주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을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상속인에 대해서는 최초 가맹금이 면제됩니다. 단, 소정의 교육비, 기타 경비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가맹계약서 40조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가맹계약서 39조
업무위탁	불가능	-		

기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전·대차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일방적인 해지포함)에 따른 가맹계약 종료 후 1년 내 대한민국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금성회관]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소고기 및 돼지고기 구이, 갈비를 판매하고, 당사의 [금성회관]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동일·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1. 계약기간 중에는 경업 허가불가 2.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외식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4:0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 6일이상, 월 26일이상 점포를 개장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나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휴업 7일 이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문의 : 당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3 에 의거 오전 0 시 또는 1 시부터 오전 6 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 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7 일 전에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담당팀(또는 담당 슈퍼바이저)에 통지하시고 승인을 얻으셔야 하며, 휴업일로부터 3 일전에 이를 매장입구, SNS 및 각종 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점포의 면적과 유동 인구 및 방문고객의 수에 비례하여 **주방과 홀**의 적정 운용인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점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본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가능자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귀하는 가맹점 점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점포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분기별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 → 서비스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1회/분기별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별	
회계 감사	담당자 매장 방문 → 회계장부나 POS검사 → 감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별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인 당사는 기업광고와 '제품 등'광고 등을 총괄하며, 경영적 판단과 결정으로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판촉 행사의 시행, 비용 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단위 광고/판촉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수에 안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주의 사전동의(광고 50%이상/ 판촉70%이상) →가 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 점부담액 제시(명세 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 지원비로 부담할 수 있음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 판촉비의 50%	광고· 판촉비의 50% *가맹점수에 안분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 판촉비의 100%	-		
가맹점 개별 광고 및 판촉	가맹점 개별&자발 적 광고 및 판촉	없음	100%	-	-
판촉 행사	전국적인 판촉 행사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 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 접 판매하는 상품 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경 품·기념품·팸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 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 사 시작	분담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맹점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전국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약정의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6조(자점매입금지_사입)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사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1조(비밀유지)와 제22조(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을 당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양당사자는 가맹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바. 가맹계약의 체결 이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요식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 가맹사업의 동일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업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제38조(손해배상 및 위약금)내용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약 [5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5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중소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간판, 별도공사 등 제외)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점포의 면적과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비고
분쟁 발생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와 면담 → 당사 합의 또는 조정안 제시 →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시 분쟁 종료	자율적 해결 원칙

상기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금성회관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당사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당사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당사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당사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 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가맹본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신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의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소양 서비스 마인드 기술적 지식 배양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조리방법 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수시교육 안내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하여 개점 전 까지 이수 하여야 함	필수 교육
수시·특별 교육	신제품 교육 영업방침 행정조치에 따른 소집교육	실습교육 또는 집단 강의	교육실시 14일 이전에 교육 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 교육

※ 수시·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일정이나 기한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6시간/1일	4,400	-교육비는 개업 및 운영교육비를 포함하는 금액임
수시·특별 교육	필요 시 산정	교육실시 14일 전에 교육비용 등을 통지, 통상 실비 수준	추정금액 사전고지

수시·특별교육은 개업이후 교육으로 최소시간이나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가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2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직영점 없음
2	...	...	...
3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직영점 0곳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 | | |
|------------------------|-----|
| 1. 제무재표 등 | 별-1 |
| 2. 메뉴 가격표 | 별-2 |
| 3.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 별-3 |
| 4.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 별-4 |

제 무 재 표 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메뉴 가격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메뉴 내용은 가맹본부에서 운영, 관리하는 합정본점 기준이며,
각 지점별로 그람 수 및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주요 품목 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1. 식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필수설비/집기/ 소모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금성회관]의 정보공개서를 제
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또는 방법 :

20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현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금성회관]의 정보공개서를 제
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가맹희망자

주 소 :

전화번호 :

수령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수령장소 또는 방법 :

20 년 월 일

수령인 : (인)

가맹본부 : (인)